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19일
- 나. 발 의 자: 이예찬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예찬 의원)

- 가.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책무,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안 제4조 ~ 제6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7조 ~ 제8조)
 -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운영(안 제11조 ~ 제13조)
 - 통합지원회의, 수당, 사무의 위탁(안 제14조 ~ 제16조)
 -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안 제17조 ~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는 노화·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돌봄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와 삶의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시설과 병원 중심 돌봄 및 진료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악화 우려 ▲시설 중심의 돌봄 제공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인권 문제 대두 ▲보건·의료와 복지 부문 간 연계 부족 등 돌봄 서비스의 분절화 우려 등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게 됨.
-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6. 3.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법 시행 이전에 관련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2022. 7. 14.)되었음.
- 한편,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 안내」에 따라 법의 위임사항 및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5년 6월 기준 총 10,335명으로 파악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목적)는 기존에 상위법으로 인용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한 것임.
- 안 제2조(정의)는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본 조례가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조례임을 명확히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및 예산·인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매년 지역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자원 조달,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이는 통합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3항은 시행규칙 제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및 제19조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절히 규정함
- 안 제6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통합지원 사업을 규정함. 이를 통해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안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는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당사자 및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돌봄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되며, 법 제13조에 근거함.
- 안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는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 상황을 점검·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4조에 근거함.
- 안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는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상담·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는 구 분청 내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는 협의체의 구성, 위원 자격,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13조(협의체의 운영)는 협의체 회의의 소집,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함.
- 안 제14조(통합지원회의)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변경 등을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15조(수당)는 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6조(사무의 위탁)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 조사·판정 업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17조(교육 및 홍보)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안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는 통합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위임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기본 체계를 구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영등포구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2026년 1월 통합돌봄 전담조직인 ‘돌봄기획팀’(어르신복지과)을 신설하고, 2025년 11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행정적 준비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2
----------	-----

발의연월일: 2026. 1. 19.

발의자: 이예찬 · 이성수 · 전승관
정선희 의원(4인)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다. 책무,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안 제4조 ~ 제6조)
- 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7조 ~ 제8조)
- 마.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 제10조)
- 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운영(안 제11조 ~ 제13조)
- 사. 통합지원회의, 수당, 사무의 위탁(안 제14조 ~ 제16조)
- 아.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안 제17조 ~ 제18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구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본청 내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 담당 지사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전문기관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5조(수당) 제13조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 및 제14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등포구민 및 기관·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등 영등포구민 참여 교육
 4. 그밖에 구청장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